

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29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(2001.4.17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장하진)

가. 제 안 이 유

- 반설치조례중 의무규정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개정하고 명예반장의 운영규정 개정으로 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반장위촉 기준개정(안 제5조)
- 명예반장 운영규정 개정(안 제6조)
- 반상회 운영규정 개정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 태 영)

- 본 조례는 **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위임**근거에 의하여 “리”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한 조례임.
- **현실성과 거리가 있거나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하여 반조직의 활성화를**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행정시책 **“침투”**를 ⇒ **“전달”**로
- 반장은 **“20~60세”**를 ⇒ **“20세 이상”**으로
- **명예반장 기준완화와 해촉기준** 제시
- **매월 반장회의 의무조항 완화**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